

의안번호	2208721
의 퇴 인	박용갑 의원
회 답 일	2025. 4. 15.
추계번호	25A140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공공보건의료시설 외에 산후조리원을 추가 - (현행) <u>공공보건의료시설</u> - (개정안) <u>공공보건의료시설, 산후조리원</u>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개정안과 같이 사회기반시설에 산후조리원을 포함할 경우 산후조리원의 신설·증설·개량 및 운영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재정지원¹⁾과 부담금²⁾ 및 조세³⁾ 감면 등을 실시할 수 있음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6조(부담금 등의 감면) ②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한편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등을 위하여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한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관련 이익을 재정지원 절감 등에 사용⁴⁾할 경우 국가 등의 추가재정소요는 일부 감소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속하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총사업비와 연차별 사업계획 등을 현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사유에 해당

- 첫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현행법 제8조의²⁵⁾ 등에 따라 주무관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민간투자사업 총한도액 등의 국회 의결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추계기간의 산후조리원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건수와 규모를 예측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함
- 둘째,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을 발굴·지정하여 민간사업자 모집)과 민간제안사업(민간이 민간투자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주무관청에 민간투자사업을 제안) 방식으로 구분되나 개정안의 산후조리원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을 특정하기 곤란
- 셋째,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일 경우 타당성분석(정부고시사업) 또는 적격성조사(민간제안사업)⁶⁾를 실시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산후조리원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규모, 타당성분석 또는 적격성조사 결과, 최종 심의 결과를 예측하기 곤란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7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填)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의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④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인하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기·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할 것

2.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일 것

② 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그 타당성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의뢰를 받은 제안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적격성 조사를 해야 한다. <이하 생략>

- 참고로 2025년 4월 기준, 민간투자사업 중 복지시설은 총 21건으로 공공의료원 및 직장어린이집 등이 주류를 이루며, 동 시설에 대한 2023년도 정부지원금(시설임대료+운영비) 규모는 총 637억원임([별첨 1] 참조)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태정립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태정립	02-6788-4652	jitae@assembly.go.kr

[별첨 1] 복지시설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정부지원금 규모

(단위: 억원)

연번	사업유형명	사업명	추진단계	주무부처	주무관청	2023년 정부지원금 (시설임대료+운영비)
1	정부고시사업	국립마산병원 현대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운영중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59
2	정부고시사업	강남노인전문병원	운영중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40
3	정부고시사업	강진의료원 이전신축 민간투자 시설사업	운영중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33
4	정부고시사업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신축	운영중	보건복지부	경기도	59
5	정부고시사업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증축	운영중	보건복지부	경기도	53
6	정부고시사업	공주의료원 BTL 사업	운영중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41
7	정부고시사업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 건립 BTL 사업	운영중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	0
8	정부고시사업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시공중	보건복지부	강원도	0
9	정부고시사업	서귀포의료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운영중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	45
10	정부고시사업	영주적십자병원 신축	운영중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42
11	정부고시사업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운영중	보건복지부	충청북도	11
12	정부고시사업	의령노인전문병원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중	보건복지부	경상남도	6
13	정부고시사업	의성군공립요양(치매)병원	운영중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15
14	정부고시사업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	운영중	보건복지부	충청북도	49
15	정부고시사업	함평군공립요양병원	운영중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8
16	정부고시사업	화순 노인전문병원건립	운영중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20
17	정부고시사업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22개소	운영중	경찰청	경찰청	34
18	정부고시사업	2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22개소	운영중	경찰청	경찰청	43
19	정부고시사업	3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20개소	운영중	경찰청	경찰청	42
20	정부고시사업	4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16개소	운영중	경찰청	경찰청	37
21	정부고시사업	5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18개소	준비중	경찰청	경찰청	0
합계						637

주: 정부지원금은 2023년 실적액을 표기한 것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단계 및 연차별로 상이한 수준을 보임

자료: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국가재정/재정사업/민간투자사업현황 및 민간투자정보 상세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